

심 사 보 고 서

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00
----------	-----

2024. 10. 18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0월 11일

-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)

가. 제안사유

-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-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·가족 정책 연구,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

○ 출연 예정금액 : 1,616,466천원 (도비100%)

○ 출연내역 : 충북여성재단 운영비, 사업비

○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24년 출연금 (B)	2025년 출연계획 (C)	증감 (D=C-B)
도비(100%)	1,479,460	1,616,466	137,006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종합 검토의견

○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.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(재정지원 등)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2017년 2월에 설립한 기관임.
- 지역맞춤형 연구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유일의 성평등 교육·연구의 거점기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은 타당함.
- 2025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 대비 137,006천원증액되었으며, 주요원인은 인건비 기본급 자연증가분을 비롯해 행정시스템 변경 추진에 따른 웹기안기 구매 등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」

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70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 :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·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('17. 2. 17.)된 기관으로
 -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출연 예정금액 : 1,616,466천원(도비100%)
- 출연내역 : 충북여성재단 운영비, 사업비
- 기대효과
 - 도민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 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5. 기타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양성평등가족정책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오경숙	김명희	김태미	220-3913

기관명	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				
출자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사장 : 김 영 환 ○ 일반현황 : (소 재 지)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(현원/정원) 15/15 (주요사업)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·가족 역량강화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, 성주류화 과제 컨설팅 				
출자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1,616,466천원(도비 100%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 : 천원) 				
	구 분	2024년 당초예산액	2025년 예산액*	재원별	
	계	1,540,843	1,678,843	계	도비출연금
			1,678,843	1,616,466	62,377
* 수탁기관 수익금 제외 :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,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					
출자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 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※ 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총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
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여성재단은 대내외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·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○ 민선8기 도정 운영 방향에 맞춰, 아이키우기 좋은 충북도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진행하고, 시·군을 찾아다니며 운영하는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 ○ 특히, 2025년도에는 지역 성평등지수 향상 방안, 돌봄공동체 조성방안 연구, 가족친화인증기업 성과와 과제, 양성평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신규업무를 통해 지역의 여성·가족, 성평등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시기로, 이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(경영평가)

- 고객중심 의견수렴 구조 및 관리 체계 구축
-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도내 유관기관 업무협약 확대 운영

○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
- 자체수입률 증가 노력 필요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의 연구개발과 충북여성의 능력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'17년 설립, '18년~'20년은 출범 이후 재단 조직 안정화 및 정착 시기였으며, '22년 파견공무원 복귀완료와 함께 충북여성재단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, 여성의 권익 증진, 여성·가족 교육·연구,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,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
- 특히, 재단은 성평등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현안업무 및 신규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 중이며, 보다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내역	2024년 예산액(최종) (C)	2025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 (A)	실과 검토액 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충북여성재단 운영	1,479,460	1,616,466	1,616,466	-	137,006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북여성재단

설립근거	- 민법 제32조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			전화번호 : 043-285-2421			
주요연혁	- '17. 2. 17. : 충북여성재단 설립		기관형태	출연기관(재단법인)			
인원현황	계	정규직		2개 센터			
	34	15		19			
임원구성	구분	성명	소속 및 직위	기간			
	이사장	김○○	충청북도지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유○○	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이○○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재임기간			
	선임직이사	권○○	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선임직이사	김○○	(재)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선임직이사	김○○	(주)윙윙 대표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선임직이사	김○○	前 충청북도의회 의장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선임직이사	김○○	충북대학교 교수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선임직이사	노○○	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선임직이사	박○○	前 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선임직이사	육○○	이에스아이엔 전무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선임직이사	정○○	충북이주여성인권 센터장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선임직이사	허○○	前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	당연직감사	오○○	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	재임기간			
	선임직감사	이○○	태성회계법인 대표	2023. 2. 17. - 2025. 2. 16.			
조직							
주요기능	- 여성·가족 정책연구·개발,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, 지역 여성리더십 향상 및 역량 강화,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, 기타 여성관련 사업추진 등						
자본금 (단위 : 백만원)	100			출자·출연액 (단위 : 백만원)	1,479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 : 백만원)	연도	2022	2023	2024	재무현황 (백만원) '23.12.31.기준	자산(A=B+C)	291
	예산액	1,550	1,510	1,540		부채(B)	34
	지출액	1,444	1,404	1,479		자본(C)	257
경영성과 (단위 : 백만원) '23.12.31.기준	총수익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	2,496		2,605		△109		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여성재단 출연	구분	출자	
주관부서	양성평등가족정책관		출연	1,616,466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, 민관 소통 역할 수행
-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 기능 수행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여성재단 운영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- 총사업비 : 1,678백만원(출연금 1,616백만원, 순세계잉여금 등 62백만원)
- 주요내용 : 여성·가족 정책조사·연구,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및 교육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1,678		
운영재원	1,671		
인건비	1,009	- 재단 직원(15명) 보수 등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, 성과급 등)	
경비	269	-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수선유지비, 자산취득비 등	
사업비	393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	
예비비	7		

※ 수탁기관(성별영향평가센터·여성긴급전화1366센터) 사업비 별도

□ 기대효과

-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충북여성재단은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,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과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금액임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 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